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011]

의견서

2019. 11.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법안 요지

-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이하 ‘혐오표현 등’)을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큼 실제적인 차별·폭력 행위로 이어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의 내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삭제 및 임시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본 개정안은 이용자가 ‘혐오표현 등’에 대하여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혐오표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및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된 모든 정보에 대해

서 엄밀한 판단없이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 집니다. 더군다나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규제 대상 정보인 ‘혐오 표현 등’의 개념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큽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 차별하는 표현’을 ‘혐오표현 등’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든 부정적, 비판적인 표현들이 이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삭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본 개정안은 사회적 담론 형성에 필요한 표현들마저 차단 되도록 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도 높습니다.

4. 결론

- 본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합니다.

<끝>